제5편 교무 및 연구행정

1. 교수연구년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년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에 일정기간 근무한 교원에 대하여 대학의 일상업무(강의, 학생지도 및 위원회 등)를 떠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허가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 및 기간) ①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5년 또는 10년 이상 근속할 때마다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 (2008.3.1.개정)(2023.11.14. 개정)

② 연구년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5년 이상은 6개월, 10년 이상은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 (2023.11.14. 신설)

제4조(인원의 제한) ① 연구년 해당교원의 연간 인원수는 재적 전임교원 전체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(2008.3.1.개정)

② 제1항의 7분의 1의 초과로 인하여 연구년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되는 기간은 다음 연구년 기한계산에서 앞당겨 신청할 수 있다. (2008.3.1.개정)

제5조(신분보장)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. (2023.6.21.개정)

② 연구년 교원에게 연구년 기간 중 봉급, 기타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보수 이외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(2023.6.21.개정)

③ 연구년 기간중 승진,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구년 기간중의 승진, 승급은 유보된다.

제6조(의무) ① 연구년 교원은 약정된 연구년 기간 종료후 즉시 본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. (2023.6.21.개정)

② 연구교원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2008.3.1.수정)(2015.1.24.수정)(2019.2.8.개정)

③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종료후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기본과제를 선택하여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고 총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(2023.6.21.개정)

1. 국제학술지(AHCI, SSCI, SCI)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에 연구논문 1편
2. 국내외 전문서적 1권
3. 150쪽 이상의 번역서 1권 (2008.3.1.추가삽입)

④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. (2023.6.21.개정)

⑤ 국내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교원은 본 대학교에서 1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.

⑥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의 급여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 및 2항,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다시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 (2015.1.23.항신설)

제7조(신청절차) 연구년을 원하는 교원은 희망학기 개시 3개월 이전에 소정의 연구년신청서, 연구계획서,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및 서약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한다. (2019.2.8.개정)

제8조(승인)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승인한다.
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년 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,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, 기타 연구년 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 (2008.3.1.삽입)

③ 연구년 신청자가 제4조에서 정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연구년 최초신청자, 최근 3년간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상위인 자, 학교발전에 기여한자 순으로 선정한다. (2008.3.1.삽입)

제9조(강의담당 교원의 대체) ① 연구년 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 교양학부 및 학과 다른 전임교원이 담당한다. 다만,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때에는 시간강사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(2020.4.21. 개정)

② 학생지도업무 및 기타 관련업무는 교양학부장 및 학과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2020.4.21. 개정)

제10조(출장, 파견 및 연수기간의 연구년 간주)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출장, 파견 및 연수 등의 기간은 이 규정에 의한 연구년으로 본다.

제11조(영리목적의 활동 금지)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타 대학,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연구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순수한 영리목적의 타 기관 피고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.

제12조(소환) 총장은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이 그 기간 중 목적활동 위반시에는 즉시 소환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1호)(2019.2.8.개정)

연구년 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신 청 인</td><td>소속</td><td colspan="2">대학(원) 학부
직위 : 전공(학과)</td><td>성명</td><td>국문:
영문:</td></tr>
<tr><td>임용일자</td><td colspan="2">. . .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19 . .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과거 연구년
수혜 사항</td><td>종 류</td><td colspan="4">기 간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4">년 월 - 년 월 ( ) 개월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4">년 월 - 년 월 ( ) 개월</td></tr>
<tr><td>신청연구년의
종류 및 기간</td><td>종 류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기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구년기간중담당과목 등에대한 의견</td><td colspan="5">1. 담당과목 :
2. 대강문제 :
3. 논문지도 학생에 대한 문제 :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최근 6년간의 공적으로 해외여행 경력 <개인적인 여행은 제외></td><td colspan="2">기 간</td><td>여행지</td><td>목 적</td><td>비고
(학교명/기관명 등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첨 부</td><td colspan="5">1. 연구계획서 1부
2. 기타 증빙서류(외부기관 지원의 근거서류 등/해당자에 한함) 1부.</td></tr>
</table>

본교 교수연구년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총 장 귀하

비고 :

1. 신청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입학처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교수연구년제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별지서식 2호)

교육 · 연구 등 업적에 관한 보고서

1. 특별한 교육 실적(새로운 강의 개발, 교수법 적용 등)

2. 연구업적 목록(제목, 연도, 게재학술지명)**

3.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 실적(학내 봉사(입학, 평가), 교내위촉, 특별수상 등)

4. 기타 업적

소속 : 대학(원) 학부 전공(학과)
성명 : (인)

** 교육·연구 등 업적은 연구년을 처음 신청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부터, 이전에 연구년을 수혜받은 교원은 마지막 연구년 종료 후부터 신청일까지의 업적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.
**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(별지서식 3호)

연 구 계 획 서

1. 연구과제명

2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3. 연구일정 및 세부계획

4. 기대되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

5. 기타 참고사항

소속 : 대학(원) 학부 전공(학과)
성명 : (인)

비고 :
1. 연구년제의 적용을 받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저서, 논문 등 연구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저서, 논문 등 연구결과물에는 “이 연구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0000년 연구년 수혜에 따른 결과임”을 명시해 주십시오.

(별지서식 4호)

서 약 서

소 속 :
직 급 :
성 명 :
생년월일 :

상기 본인은 연구년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연구년을 수행함에 있어서 꽃동네대학교의 교원임을 명심하고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킴 없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은 물론 연구년 제도의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년을 마친 때에는 즉시 귀국하여 소정의 복무를 할 것이며, 이에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약인 성명 : (인)

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 귀하